

의안번호	제 2021 - 15호
보 고	2021. 6. 7.
연 월 일	(제110차 정기회의)

보고안건

# 전문위원 업무보고

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

# 목차

I. 제140차 전체 회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
1. 일시 · 장소 ······	1
2. 참석자 ·····	1
3. 주요 안건	1
II. 논의 결과 ······	2
1.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정·수정 ······	2
2.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	5
3.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	····· 10
4. 전문위원단 의견 요약	····· 22
5. 추진 일정	····· 23
Ⅲ. 향후 일정 ·····	28

# 【별첨】

- 이재신, "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·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"
- 최성국, 유관모, "제8기 양형위원회 설정/수정 대상 범죄군 제안"
- 이형일, "제8기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범죄[군형법범 등] 검토"

~

# I. 제140차 전체회의

## 1. 일시·장소

○ 일시 : 2021. 5. 24.(월) 16:00 ~ 18:00

○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#### 2. 참석자

○ 전문위원(12명) : 수석전문위원, 김혜경, 김희연, 박성훈, 백광균, 범현, 유관모, 이재신, 이형일, 최성국, 최준혁, 한상규 전문위원(이 상 가나다 순)

○ 간사 : 운영지원단장

## 3. 주요 안건

○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(양형기준 설정/수정 대상 범죄군 등) 검토

# Ⅱ. 논의 결과

- 1.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정 · 수정
  - - <u>다수 의견(10인)</u> : 포함
      -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① 형의 종류 선택 및 ② 형량 산정 시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, 형의 종류 선택 및 벌금형 형량 산정기준 제시가 미흡한 상태임
      - 실무와 사회에서도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을 요청함
-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이 자주 선고되는 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(각급 법원)
- 모든 범죄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1) 가장 많은 벌금형의 선고가 있는 범죄, 혹은 2) 해당 범죄의 유죄 건수 중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일정한 건수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(대한 변호사협회)
- 기업범죄적 성격의 환경범죄,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등에 대하여 벌금 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(한국형사정책연구원, 고용노동부)

# ○ <u>소수 의견(1인)</u> : 제외

-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소득 또는 재산 비례 벌금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·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, 그에

대한 논의 없이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 은 시기상조임

- 벌금형 양형기준은 현재까지 양형위원회가 하여 온 징역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과는 궤를 달리 하는 것으로, 벌금형 양 형기준 설정 작업을 위해서는 비교법적 검토, 방대한 조사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함. 현재 양형위원회에 당면한 과제 가 많으므로, 그 과제를 먼저 수행함이 타당

# 

## ○ 다수 의견(10인) : 포함

- 개별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·수정해 온 결과 유사한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체계적·통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. 전체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
- 2018년 양형연구회 제1차 심포지엄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한 바 있음. 또한,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전체 범죄군에 걸쳐 합의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과실치사상·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추가하면서 양형위원회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를 디지털 성범죄에 축소 한정하여 검토한 바 있음
-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형량범위와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, 이에 따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 런 양형요소를 체계적 ·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

# ○ 소수 의견(1인) : 제외

- 합의 관련 양형요소는 매 기수 양형위원회의 각 개별 범죄 군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결과에 따라 각 범죄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으로, 이를 어느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

# 다.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재검토 ⇨ 전문위원 11인 중 2인 포함 의견 / 9인 제외 의견

#### ○ 다수 의견(9인) : 제외

- 상해치사, 폭행치사,체포·감금치사,유기·학대치사 등 범죄는 모두 기본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므로, 기본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그에 대하여 가중하는 형태로 권고 형량범위가 결정됨이 타당함. 따라서 기본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대로 둔 채, 결과적 가중범위 권고 형량범위를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
- 통계상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가 없음: 상해치사, 폭행치사 등 범죄의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, 이는 작량감경을 통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종전 양형실무의 70~80%를 반영하는 형량범위 설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,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영역, 특별가중영역의 적용 또는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이탈 등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함

# ○ 소수 의견(2인) : 포함

-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일련의 범죄들 (상해치사, 폭행치사, 체포·감금치사, 유기·학대치사 등)에 대 하여 형량범위의 기본 구간이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쉽지 않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

- 위 범죄들의 경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선행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임에도 기존 양형기준이 현저히 낮게 설정됨. 심지어 기본 형량범위가 법정형보다 낮은 경 우까지 있어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형의 선고가 어렵고 구체적 타당성도 담보할 수 없으 므로 형량범위 상향 필요성 높음

## 2.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

#### 가. 고려 사항

- 2007. 1. 26. 법률 제8270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 제2항에서는 국민적 관심,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
- 제1~7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(양형이 특히 어려운 유형의 범죄, 실무에서 양형기준에 대한 설정 요청이 있는 범죄 등)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 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

#### 나. 설정 대상 포함에 의견이 일치된 범죄군

#### (1)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

- 대상 범죄
- 개인정보보호법위반, 신용정보법위반, 위치정보법위반, 정보통

신망법위반,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

- ☞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의 구체적 내역은 추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 예정
-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
  - PC와 인터넷, 모바일 기기 이용의 생활화,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해킹,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거래 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,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음
  - 발생빈도가 증가하였고 낮은 편이 아니며[2006~2008년 584 건(0.14%) ➡ 2011~2020년 4,037건(0.25%)], 징역형 비율 (71.04%)도 높은 편임

#### (2) 관세법위반범죄

- 대상 범죄
  - 밀수출입, 관세포탈, 가격조작, 밀수품취득,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관세) 등
  - ☞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의 구체적 내역은 추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 예정
-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
  - 밀수출입, 관세포탈 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, 사회 지도층 탈세 의혹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도 높음
  - 조세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넓은 의미의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할 필요가 있음
  - 발생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낮은 편이 아니며[2006~2008년 1,028건(0.25%) → 2011~2020년 2,444건(0.15%)], 징역형 비율(70.34%)도 높은 편임

#### 다. 설정 대상 포함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군

#### (가) 대상 범죄

- 공직자 부동산투기범죄: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[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(§86①)], 공공주택특별법위반[주택지구 지정 정보 목적 外 사용 및 타인 제공·누설(§57①)],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[미공개정보 이용행위(§28②), 직무상 비밀누설(§28①)]
- 일반 부동산투기범죄: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[미등기 전 매 및 등기원인 허위기재(§8)],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[무허 가 토지거래(§26②)], 주택법위반[전매제한 위반 및 공급 질 서 교란행위(§101 ii , iii)],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[명의신탁·수탁행위(§7①)], 농지법위반[농지취득자격증 명 부정취득(§58 i )]

####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
# ○ <u>다수 의견(8인)</u> : 제외

-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범죄유형이 다양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그간 양형 편차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거나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사회적, 실무적 요청이 크지 않음

※ 공직자 부동산투기범죄 통계(2011. 1. 1. ~ 2020. 12. 31.)¹)

단위: 명

사건명 및 적용법조	전체	징역형	벌금형	선고유예
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위반	11	11	-	-
전체	11	11	-	-

※ 일반 부동산투기범죄 통계(2011. 1. 1. ~ 2020. 12. 31.)

단위: 명

사건	명 및 적용법조	전체	징역형	벌금형	선고유예
	58조1호	20	4	16	-
농지법위반	59조1호	26	17	9	-
	소계	46	21	25	-
부동산등	등기특별조치법위반	35	24	11	-
부동산실권리지	·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	480	295	183	2
	제101조 제2호	30	1	29	-
주택법위반	제101조 제3호	39	33	6	-
	소계	69	34	35	-
	630	374	254	2	

- 선거 등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상황인 점, 현재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향후 기소될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지위와 역할, 그간의 양형기준 설정·수정 경과 및 선정 기준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

# ○ 소수 의견(3인) : 포함

- 최근「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사건」관련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, 공공기관의 내부 미공 개 정보 이용, 비밀 누설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범행 다수

<sup>1)</sup>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 조 제1항) 범죄에 관한 1심 판결은 위 죄가 처음 규정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7건에 불과함

②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사용 및 타인 제공·누설(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제1항) 범죄에 관한 1심 판결은 위 법률 명칭 변경 전 법률(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) 도입 당시인 2009년 이후 총 3건에 불과함

③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(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) 범죄에 관한 1심 판결은 위 법률 제정 시인 2009년 이후 총 1건에 불과함

④ 미공개정보 부동산 거래 이용행위(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2항) 범죄에 관한 1심 판결은 위 법률 제정 시인 2009년 이후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음

확인

- 나아가 미등기 전매, 무허가 토지거래,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취득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등 민간 부동산 투 기사범에 대한 일관된 양형기준 마련 필요

# 

#### (가) 대상 범죄

- 군기누설죄(군형법), 군사기밀누설죄(군사기밀보호법)
- 통계 현황(1심 보통군사법원 현황, 이종경합범 포함)

구분	평균	합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비밀 누설범죄	7	36	13	6	4	2	11

####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
# ○ <u>다수 의견(9인)</u> : 제외

- 실제 선고 건수가 너무 적어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경험적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, 양형편차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거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요청이 그다 지 높다고 보기 어려움
-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후보에 공무상 비밀누설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

# ○ <u>소수 의견(2인)</u> : 포함

- 방산비리 사건에 대하여 보다 더 엄중한 양형 필요
- 사건 수가 많은 범죄는 아니지만 군에서 군사기밀의 특수 성이 있고 이를 반영한 높은 법정형과 국가적·사회적 관 심도 측면에서 중요함

## 3.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

#### 가. 수정 대상 포함에 의견이 일치된 범죄군: 아동학대범죄

#### (1) 현황

-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 양형기준 2014년 시행, 2018년 수정
  -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·학대,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 상해·치사

#### (2)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

-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 준에 대한 수정 요구가 상당함
  - 2021년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 이 1,500여 건으로, 양형위원회 접수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 함(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컸던 2020년 양형위원 회 전체 접수 의견보다 많은 수준)
-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이 규정함. 양형기준 설정범위의 확대 여부, 유형의 재분류 여부,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여부, 양형인자의 정비 여부 등 검토가필요함
-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에서 2021. 6. 21. 「아동학대범죄 와 양형」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예정임. 양형연구회의 연 구 성과를 양형기준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
#### (3) 양형기준 수정 방향

~

# ○ <u>제1 의견(6인)</u> : 현재 설정된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접근

- 아동학대 관련 처벌 규정을 모아 독립된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면,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에서 다루는 학대의 대상이 아동인 경우와 노인, 장애인 등 다른 취약 계층인 경우를 범죄군에서부터 구분하여 형량범위, 양형인자 등을 달리 적용하게 되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
- 아동학대 요소가 유형 분류, 양형인자 등에 반영되어 있는 양형기준은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, 성범죄, 약취·유인·인신매매범죄, 권리행사방해범죄 등 여러 개에 이르므로, 아동학대범죄를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해낸다면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, 성범죄, 약취·유인·인신매매범죄, 권리행사방해범죄 등 아동학대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각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 요소를 모두 제거하여 함께 수정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되어 상당히 큰 작업이 됨

# ○ <u>제2 의견(4인)</u> :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독립된 범죄군으 로 설정

- 현재 아동학대범죄는 '체포·유기·감금·학대범죄군'에 포함되어 있는바, 아동학대범죄가 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와 함께 규정됨으로써 형량범위·양형인자 등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움
-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공감대를 담아내기 위 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함이 타당

# ○ 제3 의견(1인) : 새로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범죄 양 형기준 수정으로 접근

-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'중대범죄 결합 살인'을 규정하고 있고, 아동학대살해죄는 이 유형으로 분류됨이 타당함
- 44개에 이르는 범죄군 양형기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, 살인의 고의를 가진 범죄는 가급적 살인범죄로 분류하여야 하고, 그것이 양형기준을 주로 참고할 법조계와 국민의 검 색 편의에도 기여함

개정 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	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특례법	[시행 2021.3.16. 법률 제17932호]
제4조(아동학대치사)	제4조(아동학대살해・치사)
<신 설>	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	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
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	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
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	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
에 처한다.	역에 처한다.

## 나. 수정 대상 포함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군

- - 교통범죄 양형기준 2012년 시행, 2016년 및 2020년 수정
    - 일반 교통사고, 위험운전 교통사고, 교통사고 후 도주
  -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    - <u>다수 의견(9인)</u> : 포함
      -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, 2회 이상 음주 또는 0.2% 이상 음주운전일 경우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의 법정형 하한 (징역 2년)보다 권고 형량범위[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(4

- 월 1년), 가중영역(8월 2년), ②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(8월 2년), 가중영역(1년 3년) 등]가 낮아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된 상황임
-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한 판결들이 선고됨(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291호,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고단202호,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223호 등)
-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범죄를 설정범위에 포함할지 여부,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할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

#### ○ 소수 의견(2인) : 제외

-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되었으므로, 그 적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

# 

- (가) 현황 및 제안
  - 설정 대상 범죄
    - 초병(상관, 직무수행중인 군인) 폭행·협박·상해, 영내폭행·협박, 직권남용(위력행사)가혹행위 등
  - 군형법상 성범죄와 같이,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군 형법상 폭력범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 추진
  - 통계(1심 보통군사법원 현황, 이종경합범 포함)

구분			평균	합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	상관상해		5	24	3	5	4	7	5
	상관폭행·협박		13	64	16	14	12	6	16
복력범죄 목력범죄	직무수행군인 상해·폭행·협박		20	98	17	32	23	12	14
¬¬□+	초병폭행·협박		25	126	24	45	32	9	16
	- 1 -	직권	3	17	5	8	1	1	2
		위력	22	111	30	20	8	20	33

####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
#### ○ 제1 의견(6인) : 포함

- 군사법원 사건 수 기준 폭력범죄가 성범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(군형법상 성범죄는 2020년 양형기준 설정됨)
- 상관폭행 등의 경우 이미 설정된 상관명예훼손(2019년) 등 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구조임
- 폭력범죄군 중에서 가혹행위 건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각 군 특성상 양형편차가 큰 범죄유형임

# ○ 제2 의견(6인) : 제외

- 2019년 군형법상 명예훼손, 2020년 군형법상 성범죄가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었으므로, 시급한 군형법상 범죄는 이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
- 군형법상 폭력범죄의 빈도, 양형위원회의 한정된 연구자원을 고려하면, 보다 양형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성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수정함이 타당

# (3) 성범죄 ⇨ 전문위원 11인 중 5인 포함 의견 / 6인 제외 의견

#### (가) 현황

○ 성범죄 양형기준 2009년 시행, 2010년, 2011년, 2012년, 2013

년 및 2020년 수정

○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1년 시행

####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
#### ○ 제1 의견(6인): 제외

- 성범죄 양형기준은 수정 이력이 많기에, 다시 수정하는 것 은 양형기준 불신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
- 개정 법률을 반영하는 것은, 개정 법률에 따른 사례 축적이 있은 이후에 착수함이 타당함

#### ○ 제2 의견(5인) : 포함

- 개정법률 반영: 성범죄 양형기준은 각각의 대유형 안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유형을 분류함. 그 런데 형법 개정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이 13 세에서 16세로 상향됨. 13세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음

개정 전 형법	형법 [시행 2020.5.19. 법률 제17265호
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,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.	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,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의한다.
<신 설>	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 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,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.

- 양형기준 체계상의 문제점: 별도 유형 분류와 양형인자 적용이 결합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(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

~

서 각급 법원의 의견 제시로 드러남). 또한 누범 인자[특정 강력범죄(누범)과 동종 누범] 적용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(수원고등법원 2020 노76호)

- 양형실무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등 반영: 성범죄 양형 기준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실무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 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 자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
# (4) 지식재산권범죄(기술유출범죄) ➡ 전문위원 11인 중 4인 포함 의견 / 7인 제외 의견

#### (가) 현황

○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2012년 시행, 2017년 수정

####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
# ○ <u>다수 의견(7인)</u> : 제외

-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의 상한이 법정형 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, ①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할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이 1/2 가중되어 법정형 상한과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, ②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종전양형실무의 70% 내지 80%를 반영하는 것이어서, 법정형 상한에 해당하는 처벌이 합당한 사건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이탈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함
- 지식재산권범죄는 2019년 판결 선고 사건 중 양형기준 준수율이 조사된 41개 범죄군 중 4번째로 낮은데[2019년 준수

율 하위 범죄군 ① 증권·금융범죄(69.0%), ② 약취·유인·인 신매매범죄(70.7%), ③ 배임수증재범죄(75.1%), ④ 지식재산 권범죄(76.8%)],<sup>2)</sup> 이는 모두 하한 이탈로(양형위원회 운영지 원단의 통계 확인 결과), 범행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 은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 는 사례들임 ⇒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경우, 양형기준 준 수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 있음

- 구성요건·법정형이 2019년 신설된 국가핵심기술 유출·침해 행위(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)가 적용된 유죄 판결이 현재까지 선고된 바 없으므로(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통 계), 참고할 양형례가 없음 ⇒ 이는 양형기준 설정·수정을 하더라도 적용할 사건이 적다는 것을 뜻하기도 함

#### ○ 소수 의견(4인) : 포함

- 첨단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다양화로 인해 기술유출 사건의 발생빈도와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. 기술 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인 경우 가 대부분으로, 회사의 존립에 위협이 초래되는 피해 정도 에 비해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 족한 실정임. 또한 거액이 투자된 핵심 기술의 유출 시도도 계속되고 있고, 외국 기업의 기술 인력 빼가기, 공동연구,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계속되 는 가운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하여 재검 토 필요함
- 법정형에 맞추어 양형기준 상향 필요: 현재 양형기준은 가 중영역의 경우조차 최대 4년(국내침해) 내지 6년(국외침해) 으로 규정하고 있어, 법정형(국내침해 10년, 국외침해 15년)

<sup>2)</sup>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, 2019 연간보고서, 193, 194면

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 또한 현재 적용 중인 양형기준은 2017. 5. 수정시행된 것으로서, 2019년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을 반영하여 양 형기준 또한 상향 필요

- ※ '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행'에 대하여는 2019. 8.에 별도로 벌칙 규정 신설되어(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), 현재 양형기준에 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, 이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도 필요
- 국가 차원의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노력: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,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국 부유출·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등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범정부적 논의가 계속 중으로, 양형기준 강화 필요

# 

○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시행

####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
- <u>다수 의견(7인)</u> : 제외
  - 법률 개정사항이 없고, 권고 형량범위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실무상 요청이 그다지 크지 않음
  - 국제뇌물방지법위반은 선고 사례가 거의 없어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

# ○ 소수 의견(4인) : 포함

- 뇌물범죄는 2009. 4. 24. 1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설정

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개정이 없었는바, 현행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

- OECD 권고사항으로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가 요구되는바, 국제뇌물방지법위반을 뇌물범죄군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

# (6)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→ 전문위원 11인 중 3인 포함 의견 / 8인 제외 의견

#### (가) 현황

○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년 시행

####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
- <u>다수 의견(8인)</u> : 제외
  - 당분간 현행 양형기준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
  -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,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'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'라는 특별가중인자를 통하여이를 반영하고 있음: 2019년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 사건 14건 중 제1유형(비조직적 범행)이 3건, 제2유형(조직적 범행)이 11건임
  -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,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실무상 요청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: 2019년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 사건 14건이 모두 양형기준을 준수함

# ○ 소수 의견(3인) : 포함

- 현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비조직적 범행/

조직적 범행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으나, 유사수신 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유형 구분의 실효성 부족

- 현실에서 발생하는 유사수신 범죄는 일정한 계급적 조직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행되어 그 전체 피해액 규모 또한 막대하므로 전체 피해액 규모를 우선적인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. 즉, 수신액(또는 부당이득금액)을 기준으로 '① 5억 원 미만, 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, ③ 50억 원 이상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율하되, 양형인자에서 수신액 기준을 제외하고, 비조직적 범행을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추가함이 상당
- 나아가 유사수신 범죄는 일반 서민다중을 대상으로 한 민 생침해범죄로서 서민생활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전체적으로 상향할 필요 있음

# 

#### (가) 현황

○ 약취·유인·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2011년 시행, 2014년 및 2018년 수정

#### (나) 전문위원단 의견

## ○ <u>다수 의견(9인)</u> : 제외

- 인신매매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음. 당 분간 현행 양형기준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. 즉, 2019년 선고 판결 중 약취·유인·인신매매범죄 양형기 준이 적용된 사건은 모두 37건인데, 모두 약취·유인범죄이고 인신매매범죄는 없음. 2016년 이후 선고 판결 중 인신매매범죄에 관한 형법 제289조(특별법 포함)가 적용된 사건은 장기적출인신매매예비 3건, 영리인신매매예비 1건 등 4건에 불과함(예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음)

-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2021. 4. 20. 제정, 2023. 1. 1. 시행 예정)에 따라 인신매매 관련 범죄군을 확대(성매매처벌법위반, 청소년성보호법위반, 근로기준법위반 등)하는 등 양형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, 이 법에서 인신매매등범죄를 넓게 규정한 취지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, 이미 성매매범죄, 성범죄, 근로기준법위반범죄 등 해당 범죄군에 포함되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재분류할 실익을 찾기 어려움

# ○ <u>소수 의견(2인)</u> : 포함

- 인신매매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UN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,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의 요청을 고려할 필요 있음
- 2021. 3. 24.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『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이 국회를 통과하였고, '인신매매등범죄'에 『형법』 및 『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외에 『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』 및 『근로기 준법』등 여러 법률 위반 행위를 포함하도록 규정(법률 제2조 2호)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
- 현행 인신매매 양형기준은 『형법』제31장 및 『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제5조의2에 각각 규정된 약취·유

인·인신매매 범죄만 규정하고 있으나, 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참고하여 인신매매범죄 군을 확대하여 양형기준을 재정립하고, 행위 유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 있음

- '인신매매 범죄'는 그 자체로써 죄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, 노동력 착취, 성적 착취, 장기적출 등 그와 연관된 일련의 범죄들도 죄질이 무거우므로 형량범위 상향할 필요 있음

## 4. 전문위원단 의견 요약

	구분		주제	포함 지지 전문위원 /의견 표명 전문위원
1	1 전체 범죄군에	1-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	10/11	
1	•	양형기준	1-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	10/11
	설정	・수정	1-3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범 위 재검토	2/11
			2-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 련 범죄	11/11
2	2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 최군	2-2 관세법위반범죄	11/11	
		2-3 부동산투기범죄	3/11	
			2-4 군사기밀누설범죄	2/11
			3-1 아동학대범죄	11/11
			3-2 교통범죄	9/11
			3-3 군형법상 폭력범죄	6/12
3		양형기준 대상 범	3-4 성범죄	5/11
	기 78 죄군	41.9 E	3-5 지식재산권범죄	4/11
			3-6 뇌물범죄	4/11
			3-7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	3/11
			3-8 인신매매범죄	2/11

※ 전문위원단 절반 이상 지지를 받은 주제는 굵은 글씨 및 고딕체 표시

## 5. 추진 일정

#### ※ 전문위원단 절반 이상 지지를 받은 주제 대상으로 임시 분류

구분	주제	전반기	후반기
1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	1-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	0	0
절신 상영기군 결   정·수정	1-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	0	
2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	2-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 련 범죄		0
	2-2 관세법위반범죄		0
	3-1 아동학대범죄	0	
3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	3-2 교통범죄		0
	3-3 군형법상 폭력범죄	0	0

- 1-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, 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고, 후반기에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진행함
  -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방안으로는 ① 징역(금고)형과 벌금 형 중 선택의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, ② 벌금형 형량 산정 기 준만 제시하는 방안, ③ 형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을 모두 제시하는 방안이 가능하고, 각각의 경우에 ⑦ 전 체 범죄군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, ⓒ 개별 범죄군별 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, 각 방안 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설정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

-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선거범죄는 구공판 기소되고 합의부에서 재판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기준의 적용(유형 분류, 양형인자 등)에 관하여 충분한 법정공방이 가능함. 그런 데 벌금형 양형기준을 구약식 사건(벌금형은 약식명령 70~80%, 판결 20~30%로 약식명령이 다수를 차지함)에도 적용 한다면 구약식 기소 및 약식명령 발령 과정에서 실무의 부담 이 커지는 문제가, 구약식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소 방식(구약식 기소인지 구공판 기소인지)에 따라 벌금형 산정 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
- 법인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의 경우, 양벌규정의 해석상 문 제,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 원칙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함
-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 하고, 설정 방안에 따라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를 비롯한 방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함
-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1-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과업으로 함(2021년에는 코로나-19 상황으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의 출장조사가 어려운 점 고려)
- 3-1 아동학대범죄는 양형기준 수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, 2021년 1월 무렵부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신속한 양형기준 수정을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, 8기 양형위원회 전반 기 과업으로 포함

-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가 통상 이루어지는 양형기준 설정(2-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, 2-2 관세법위반범죄)은 코로나-19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(2022년 4월 이후)에 진행
- 3-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은 최종 양형기준 수정이 2020년에 있었으므로 그 추이를 1년이나마 더 살필 필요 있으므로 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(2022년 4월 이후)에 진행

## ※ 참고자료(운영지원단 작성 일정안)

전문위원회의	양형위원회의	안건		
	21.5.10.(월)	o 출범식		
21.5.24.(월)	21.6.7.(월)	o 8기 추진 업무 의결		
21.6.2	21.(월)	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		
21.7.26.(월)	21.8.9.(월)	o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방안 의결		
		o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방안에 따른 각 양		
21.9.13.(월)	21.10.1.(금)	형기준 수정안 의결		
21.3.10.(절)	워크숍	o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		
		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		
21.11	.8.(월)	양형연구회 7차 심포지엄		
		o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심의		
		o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(권고 형량		
04 44 00 (81)	04 40 0 (81)	범위)		
21.11.22.(월)	21.12.6.(월)	o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		
		준 최종 의결(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		
		회 등 검토)		

전문위원회의	양형위원회의	안건
22.1.10.(월)	22.1.24.(월)	o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의결 o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(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수정안 의결
22.2.28.(월)		공청회 [대상: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/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]
22.3.14.(월)	22.3.28.(월)	o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최종 의결 o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(수정 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)
22.4.18.(월)	22.5.2.(월)	o 군형법상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o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
22.6.2	20.(월)	양형연구회 8차 심포지엄
22.6.13.(월)	22.6.27.(월)	o 군형법상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수정안 확 정 o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수정안 확정
22.8.16.(화)	22.8.29.(월)	o 군형법상 폭력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(수정 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) o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(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)
22.9.5.(월)	22.9.19.(월)	o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o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
22.9.26.(월)	22.10.7.(금)	o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심의(1)

전문위원회의	양형위원회의	안건
	워크숍	
22.10.31.(월)		양형연구회 9차 심포지엄
22.11.21.(월)	22.12.5.(월)	o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심의(2) 및 설정안 의 결 o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 정 심의(권고 형량범위) o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(권고 형 량범위)
22.12.26.(월)	23.1.9.(월)	o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 정 심의(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설정안 의결 o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(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설정안 의결
23.2.13.(월)		공청회 [대상: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안,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,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]
23.3.13(월)	23.3.27.(월)	o 벌금형 양형기준 최종 의결(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) o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(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) o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(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)

# III. **향후 일정**

○ 일시 : 2021. 8. 23.(월) 15:00 ~

○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# ○ 안건

- 제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설정·수정 대상 범죄 양형기준안의 구 체적인 논의